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53636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가소112073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6.부터 2022.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을 제작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D'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가 포함된 서체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료 지급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후 2017. 6.경 은평구 E센터의 요청으로 피고가 제작한 광고 현수막에 "우리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한마음 교육"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홍보 문구'라 한다)를 기재하면서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성명 불상의 직원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피고 제작 광고물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설치(이용)에 대한 라이선스 금액 220만 원과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금액 110만원을 합한 330만 원이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저작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참조). 따라서 서체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서체파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검토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설치하여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는 과실이 없다.



(2) 검토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피고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이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① 인터넷 블로그 상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상에서 공유되는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 및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서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블로거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은 그의 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침해된 원고의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



고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위에서 주장한 330만 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대리점인 F 주식회사가 날개로 판매하고 있는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 설치(이용)에 대한 라이선스 금액 10만 원과 별도 추가사용 라이선스 금액 100만 원, 합계 110만 원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대리점에서 서체별로 날개로 판매되는 가격 내역이라고 한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서체에 관한 것이 아닌데다가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객관적 가격이라고 보기도 부족하다.

(가)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서체 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를 포함하여 수십 종의 다른 서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라이선스 비용은 이 사건 서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탑재된 여러 종류의 서체 전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기본계약(200만원 상당)과 현수막 또는 간판 등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는 추가 라이선스(100만원 상당)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나) 원고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각 개별 서체의 개별적인 사용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2) 다만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영리 목적으로 간판 및 광고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더욱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홍보문구를 이 사건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홍보문구의 내용과 특성상 이를 접한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홍보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 특별히 크다는 자료를 찾을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서체는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하고,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이 이 사건 서체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손해액을 3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11

재판장 판사 양은상

 판사 김양훈

 판사 윤웅기